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1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5. 4.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5. 4.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아동가족과)
- 제출일자: 2025. 4. 9.(수)
- 회부일자: 2025. 4. 9.(수)
- 검토기간: 2025. 4. 9.(수) ~ 2025. 4. 16.(수)

2. 제안이유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여성 취창업 활동 지원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재진입 기회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 송현복합센터를 중심으로 여성 일자리 지원 거점 공간을 구축하고 여성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활력 있는 지역 여성 고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상시설

시설명	소재지	규모 (면적,㎡)	운영비 (1년기준)	운영 인력	비고 (개관일)
송현복합센터 (일부)	송현동 295-64번지 일원	지하1층 지상2층(일부) 지상3·4층 (1,281.15㎡)	275백만원 정도 (구비)	10명 (예정)	2026. 3. (예정)

※ 사업비 별도(2024년 729백만원, 국·시비 100%)

※ 송현복합센터 전체 시설현황

구분	시설현황	사용면적(㎡)	비고	
A동	지하2층	재활용작업장 창고, 주민프로그램실	164.57	청소과, 송현1동
	지하1층	강의실 1·2, 창고 1·2	372.52	아동가족과
	지상2층	경로당	155.38	어르신장애인과
		상담실 및 임시보육실	253.47	아동가족과
	지상3층	사무실 및 컴퓨터실	323.97	아동가족과
	지상4층	다목적실	331.19	아동가족과
B동	지상1층	재활용작업장 및 휴게실	109.34	청소과
	지상2층	시니어일자리작업장 및 사무실	146.61	어르신장애인과

나. 위탁개요

○ 위탁내용

- 민간위탁 사무 추진을 위한 시설 관리 및 운영
-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사업(국가사무) 추진
-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 취업 지원을 위한 구직상담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정보 제공
- 여성고용업종 기업 여성 일자리 연계
- 일·가정 양립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사업
- 지역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여성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발굴 및 추진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위탁기간: 5년(2026. 1.~2030. 12.)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선정

4. 관련근거

-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및 제7조

5. 검토의견

- 우리구는 가족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취업을 희망하거나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들까지 보다 근본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제활동 중단 사전예방을 위한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을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에서 지정운영사업 승인을 받아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여 왔으며,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현황

시설명	소재지	운영법인/ 운영기관	운영인력	비고
달서가족문화센터 (3·4층)	조암남로 137	달서문화재단/ 달서가족문화센터	9명	2018년~현재

- 본 동의안은 송현복합센터(2026. 3월 완공 예정) 내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거점공간 확대와 일자리 사업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공간을 구축하고,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내용임.

- 위탁업체 선정방법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개경쟁모집으로 하고, 수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 적합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일관되고 안정된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등 위탁절차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운영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로, 여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취업·창업 지원 등 그 사무의 전문성 및 노하우를 고려할 때 해당 사무를 전문 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됨.
- 다만, 위탁기관 선정 시에 위탁사무 수행 관련 전문성 확보가 요구되며,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일자리창출 지원
2. 구인·구직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4. 직업교육훈련 지원
5. 기업 등의 인턴취업지원 등 일경험 사업 지원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종류·범위, 위탁의 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따른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90일 전까지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에 의해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 12. 11.)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또는 감사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대상기관의 인력·기구 및 재정부담능력
2. 수탁대상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대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역간 균형분포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가 끝나면 해당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밖에 법률 전문가 등 구청장이 위원회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수탁시설의 향후 운영계획

2. 대표자 및 상근근무자의 전문성

3. 위탁 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4. 제8조 수탁기관 선정기준의 충족 여부

5.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대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 사유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예산지원액 및 계약위반시의 책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위탁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